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고찰

## Review of Designation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Manager of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박성렬\*  
Park, Sung-Yeol

### 요약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있어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자, 상시 근로자

## 1. 서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또는 제3호 가목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 검토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 즉,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는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자체 선임된 안전관리자 대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력 등이 부족하고, 때로는 보안상의 이유로 연구실에 출입하거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saintten@daum.net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보니,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있어서 비전문가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은 비전문가로서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홀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방안 제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가에 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제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연구실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요건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와 같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4. 결론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제외하거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률 제17350호)  
산업안전보건법(2022), 고용노동부(법률 제18426호)